

—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 —
—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택지개발, 아파트 신축 등으로 지역여건이 변화된 지역에 통리반을 조정하고 통·리장 정수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통리반조정 : 27개 통, 220개 반 증설
 - 통·리 : 511개 통·리(통344, 리167) ⇒ 538개 통·리(통371, 리167)
 - 반 : 3,532개 반 ⇒ 3,752개 반
 - ※ 통증설 : 선주·원남(13), 사곡·상모(1), 입오(1), 인동(7), 진대(4), 양포(1)
- 통리장 정수 조정 : 27명 증가(통장)
 - 통·리장 정수 : 511명(통장:344, 리장:167) ⇒ 538명(통장:371, 리장:167)

4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4조6항
-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

5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제4조6항에 의거 설치된 행정동의 지원을 위한 하부조직인 통리에 대하여 지역여건 변화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임.

- 택지개발 사업지구인 봉곡, 상모·사곡, 인의진평 지구에 대한 아파트 신축, 주택개발 등으로 선주·원남동 13개통, 상모·사곡동, 임오동, 양포동에 각각1통, 인동동 7개통, 진미동 4개통을 증설하여 총27개통과 그에 관련된 220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7개통 증설에 따른 통리장 정수를 27명을 증원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임.
- 지역별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임.